부다페스트협약과 현행 국제공조 조직, 협약, 법과의 차이점 및 가입 준비 방안 제시

김 태 룡*

■ 제출확정 : 2021. 02. 12.

--- 논 문 요 약 -

유럽사이버범죄협약(이하 부다페스트협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가입 필요성이 오랫동안 논의되어왔으나, 국내법과 상충되는 문제로 여전히 미가입국으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협 약 가입이 미루어지는 이유와 그에 대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본 논문에서는 부다페스트 협약과, 그와 유사한 국제공조 조직, 협약, 법과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부다페스트협약 가 입 준비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주제어] 부다페스트협약, 유럽 평의회 협약, 국제공조

모 키

■ 심사개시 : 2021. 02. 19.

[부다페스트협약]

- I. 들어가며
- Ⅱ. 부다페스트협약
 - 1. 가입의 필요성
- 2. 가입이 미루어지는 이유

■ 과제제출 : 2021. 02. 12.

- 3. 부다페스트협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태도
- Ⅲ. 현행 국제공조 조직, 협약 법과의 차이점
 - 1. 국제형사경찰기구

- 2.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 협약
- 3.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 Ⅳ. 부다페스트협약 가입 준비 방안 제시
- 1. 공조 데이터 평준화
- 2. 민관 협력 익명데이터 수집 체계
- 3. 국내법 정비
- V. 마치면서
- ※ 참고문헌

[부다페스트협약]

1. 부다페스트협약

^{*} KITRI Best of Best 9기 디지털포렌식 트랙 교육생.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협약 중 185번째인 사이버 범죄에 관한 협약은, 2001년 11월 23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사이버범죄 국제회의에서 출발해 '부다페스트협약'이라고도 불린다.

논문을 작성하는 2021년 02월 10일 기준, 유럽 평의회 회원 47개국 중 46개국이 서명하였으며, 44개국이 비준 의사 표명과 함께 협약이 발효된 상태이다. 유럽 평의회 회원이 아니지만 조약에 서명한 국가는 4개국이며, 21개국이 비준 의사를 표명과 함께 협약이 발효된 상태이다.²⁾

2. 협약 내용3)

부다페스트협약은 저작권 침해, 컴퓨터관련 사기, 아동 포르노, 컴퓨터 및 인터넷을 통한 범죄 등에 대한 최초의 국제 협약으로, 사이버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졌다.

협약은 제48조 까지 있으며, 필자가 이해한 각 조항별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항	내용	조항	내용	조항	내용	조항	내용
1	데이터 및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의	13	법적 책임자에 대한 제재 조치 기준	25	상호 지원에 관한 일반 원칙	37	협약 가입에 대한 원칙
2	불법 접속에 대한 입법/제정 요구	14	각 조항에 대한 권한 및 절차의 범위	26	자발적 정보 공유에 대한 원칙	38	영토별 협약 발효에 대한 원칙
3	불법 감청에 대한 입법/제정 요구	15	인권, 공익성 등을 통한 안전장치 마련	27	상호 지원 요청 관련 절차	39	협약의 효과
4	데이터 변조에 대한 입법/제정 요구	16	저장된 데이터의 신속 보존 조치	28	정보의 기밀성 및 사용 제한에 대한 원칙	40	선언문
5	시스템 손상에 대한 입법/제정 요구	17	트래픽의 신속 보존 및 부분 공개	29	컴퓨터 데이터의 신속 보존 요청 시 원칙	41	연방조항
6	장치 남용에 대한 입법/제정 요구	18	제출 명령	30	트래픽 데이터의 신속 공개 요청 시 원칙	42	비준서 예치 조항
7	컴퓨터관련 위/변조에 대한 입법/제정 요구	19	공조를 위한 컴퓨터 데이터 확보 및 보존	31	데이터 접근의 상호 지원에 대한 원칙	43	비준 철회 관련 조항
8	컴퓨터관련 사기에 대한 입법/제정 요구	20	특정 통신 관련 실시간 트래픽 수집	32	국경을 넘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 원칙	44	협약 개정 원칙
9	아동포르노 범죄에 대한 입법/제정 요구	21	특정 통신 관련 실시간 컨텐츠 수집	33	실시간 트래픽 수집에 대한 상호 지원 원칙	45	분쟁 해결 원칙
10	저작권 침해에 대한 입법/제정 요구	22	관활권 확립을 위한 사항	34	실시간 컨텐츠 수집에 대한 상호 지원 원칙	46	협의 원칙
11	미수, 방조, 교사범에 대한 입법/제정 요구	23	국제협력에 관한 일반 원칙	35	공조를 위한 수사 네트워크(핫라인) 구축	47	협약 규탄 원칙
12	법인(책임자) 처벌에 대한 입법/제정 요구	24	범죄자 호송에 관한 원칙	36	협약 서명에 대한 원칙	48	통지 원칙

[표 1] 부다페스트협약 각 조항별 주요 내용

²⁾ 서명 확인: https://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treaty/185/signatures

³⁾ 원문: https://rm.coe.int/CoERMPublicCommonSearchServices/DisplayDCTMContent?documentId=0900001680081561

I. 들어가며

부다페스트협약은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제 협약으로, 정보화가 가속화 될수록 국경을 초월한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기에 이러한 국제 협약은 국경을 넘나드는 사이버 범죄를 진압하는데 분명 큰 도움이 된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각 부처별 협약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그 실효성과 국내법과의 마찰 등을 우려하여 여전히 가입이 미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국제 범죄에 대항하고자 탄생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는 우리나라 경찰 청 외사국에 설치되어있으며, 현재까지도 긴밀한 공조를 이어 나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을 통하여 무엇이 둘의 차이점을 만들어내며, 부다페스트협약 가입이 미루어지 는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田. 부다페스트협약

1. 가입의 필요성

사이버 범죄 대항에 가장 우선시해야 할 일은 국내법에 적용시켜 범죄를 성립시키는 일이다. 하지만 표준화된 법체계가 없을 경우, 법의 허점을 노린 사이버 범죄가 생겨나며, 사이버 범죄에 대한 법이 미비한 국가는 각종 범죄자들의 피난처가되어버리기 십상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부다페스트협약이 생겨났으며, 협약국이 될 경우, 국내법 제정에 도움을 주고4, 협약국간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으며,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제공조수사 요청 건수는 2015년 284건에서 2019년 858건으로 4년 새 약 3배 늘어났다. 같은 시기 국내 사이버범죄는 14만4679건에서 18만499건으로 24.8% 증가하였다.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사이버 범죄와 국제공조수사 요청은국가 간 수사 정보와 경험 공유를 강제하는 실정이다.

⁴⁾ 대부분의 미국 주(140개 주 이상)에서 법령 제정 시 인용했을 정도로 체계가 잘 잡혀있다.

2. 가입이 미루어지는 이유

각 매체별 부다페스트협약 가입이 미루어지는 이유를 일축하자면, 국내법과의 상 충 되는 일부 조항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조항	내용	상충 요지
6	장치 남용에 대한 입법/제정 요구	국내법은 불법 감청행위 자체에 대해서만 처벌하여 범죄 예방의 실효성이 약하므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12	법인(책임자) 처벌에 대한 입법/제정 요구	국내법제도에는 법인에 대한 처벌 조항 및 규정이 없으므로 신설이 필요하다.
16	저장된 데이터의 신속 보존 조치	국내「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 자료로 대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 한 보안이 필요하다.
17	트래픽의 신속 보존 및 부분 공개	국내「통신비밀보호법」제2조에는 통신경로·통신크기·서비스유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18	제출 명령	국내 전기통신법상 제83조 제3항에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해 통신자료를 요청하면 '따를 수 있다'라고 강제성이 없도록 규정하여 사업자가 응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규정이 없다.5)

[표2] 국내법과 상충되는 부다페스트협약 주요 조항6)

이외에도 협약에 가입할 경우 우리나라 국민의 데이터를 해외에 제공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적절한 보호절차가 마련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 부다페스트협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태도

국내법과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2011년 법무부에서는 협약에 대한 용역과제를 위탁하였으며, 수탁사의 최종 보고서인 "사이버범죄 대처를 위한 EU 사이버범죄협약가입 필요성과 가입에 따른 협약이행 방안" 문건에는 협약 가입의 필요성과 보완사항, 각 조항에 대한 문제점, 부다페스트협약에 대한 우리나라, 일본의 입법현황비교까지 상세히 기술되어있다.

경찰청에서는 2020년 06월 23일 사이버범죄협약 가입 및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해외 주요국의 사이버범죄 관련 법제의 비교법적 검토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7) 이는 주요 가입국의 사이버범죄 관련 법령을 비교하고 검토해 국내 사이버범죄 관련 법

4 디지털 포렌식 과제 김태룡 (2021)

⁵⁾ 이기수 · 민수현, "한국과 중국의 사이버범죄 형사사법공조 강화를 위한 법개정 검토-유럽사이버범 죄 협약을 기준으로",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4호, 2018, 545쪽.

⁶⁾ 정태진, 이광민,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부다페스트협약 가입과 국제공조 연구", 「경찰학논총」, 제14권 제2호(2019), 9면.

⁷⁾ 뉴스핌 보도(2020.6.24.) : https://newspim.com/news/view/20200623000783

령을 정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목적8)으로, 최종 보고서에는 국내 이행을 위한 절차법 정비방안으로 협약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항, 제19조 제4항에 대한 협약 내용과 규정의 흠결, 주요 해외 입법례, 국내 입법안, 국내 유사 입법례, 이행 방안을 상세히 기술 해 두었다.

위 사실을 통해 우리나라는 부다페스트협약에 대하여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가입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현행 국제공조 조직, 협약 법과의 차이점

1. 국제형사경찰기구

우리나라는 부다페스트협약 가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미가입국으로 남아있지만, 국제공조를 위한 조직인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는 1964년 가입하여 지금까지 긴밀한 공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는 것이며, 국제형사경찰기구의 어떤 점에 주목한다면 부다페스트협약 가입에 한걸음 다가 갈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차이점을 찾아보았다.

항목	부다페스트협약	국제형사경찰기구9
형태	국제협약	국제기구
목적	국제사이버범죄 예방과 처리, 공조를 위한 수사 네트워크(핫라인) 설치	국제범죄 예방과 처리, 공조를 위한 수사 네트워크(상호협력체제) 구축
제약	명시된 조항에 맞추어 법안을 제정함으로 써 범죄 성립요건을 달성시켜야 한다.	어떠한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인종적 문제에도 개입 할 수 없다.
공조 범위	회원국 간 범죄관련 증거 및 자료에 대한 직접적인 협력 요청과 용의자 추적 요청을 허용한다.	회원국의 국내법 범위 내에서 필요 자료 및 정보를 교환하고, 범인체포 및 인도에 상호 협력한다.

[표 3] 부다페스트협약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의 차이

국제형사경찰기구는 국내법의 범위 내에서 공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내법을 고칠 필요가 없으나, 부다페스트협약의 경우 가입 시 명시된 조항에 맞추어 국내법을 변경해야 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이며, 국제형사경찰기구의 수사 네트워크는 다방면적인 수사 정보 공유 목적이 강하여 디지털 증거에 대한 공유가 부다페스트협약만큼은 이루어지지 못하며, 증거 협력(데이터 보존 요청) 및 용의자 추적10) 등은

⁸⁾ 온-나라정책연구: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trieveEntireDetail.do?research_id=1320000-202000052

⁹⁾ 외교부 관련자료 : http://www.mofa.go.kr/www/brd/m_3993/view.do?seq=315466

불가능하다는 차이점11)이 있다.

2.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 협약12)

유럽 평의회 협약 중 30번째인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 협약에 우리나라는 2011년 12월 29일에 가입하였으며,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항목	부다페스트협약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 협약13)
형태	국제협약	국제협약
목적	국제사이버범죄 공조를 위한 법안 제정	형사사법공조 분야에 대한 공통 규칙 채택
제약	당사국에게 피의자를 인도하지 않을 경우, 동 조약 제25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요청국의 주권·안보·공공질서 등 본질적 이익을 침해할 경우 공조를 거절할 수 있다.
공조 범위	회원국 간 범죄관련 증거 및 자료에 대한 직접적인 협력 요청과 용의자 추적 요청을 허용한다.	공조 요청국의 사법당국이 범죄와 관련된 형사절차에 있어 상호간에 가장 넓은 범위의 공조를 제공

[표 4] 부다페스트협약과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 협약 간 차이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 협약은 피요청국의 본질적 이익을 침해할 경우 공조를 거절할 수 있으며, 범죄와 관련된 형사절차에 있어 상호간에 가장 넓은 범위의 공 조를 제공하면 되기에, 자국의 이익과 관련된 사건이 아닐 경우 소극적인 대처가 가능하지만, 부다페스트협약의 경우 직접적인 용의자 추적부터 증거의 보존까지 적 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물론 가입국간 피상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부다페스트협약 가입이 필수적이지만, 역시 부담이 크다.

3.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외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공조 및 외국에 대하여 요청하는 공조의 범위와 절차를 정해둔 국내 국제형사사법 공조법과부다페스트협약을 비교하여 국내법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확인 해 보았다.

¹⁰⁾ 영장이 없으므로 체포는 할 수 없다.

¹¹⁾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ISCR 2019) 페드로 벨델로 (유럽평의회)

¹²⁾ 원문: https://rm.coe.int/CoERMPublicCommonSearchServices/DisplayDCTMContent?documentId=09000016800656ce

¹³⁾ 외교부 관련자료 : http://www.mofa.go.kr/www/brd/m_3993/view.do?seq=315466

항목	부다페스트협약	국제형사사법 공조법14)
형태	국제협약	국내법
목적	국제사이버범죄 예방에 대한 협력 증진	국제범죄 진압 및 예방에 대한 협력 증진
제약	당사국에게 피의자를 인도하지 않을 경우, 동 조약 제25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내법에 의하지 않거나 대한민국의 주권 및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조 하지 않을 수 있다.
공조 범위	트래픽 및 데이터의 확보/보존, 실시간 트래픽 및 데이터 수집, 범죄자 호송, 핫라인 구축	사람, 물건, 기록, 송달, 증거 수집/압수/수색/검증, 인도, 진술 청취

[표 5] 부다페스트협약과 국내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간 차이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 의하면 공조 범위에 포함되는 대상일지라도, 공조로 인해 우리나라의 주권 및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정치적인 성향을 띈다면 공조하지 않아도 되기에 위의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 협약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에 반해 부다페스트협약의 경우, 조항에 맞도록 국내법을 입법/제정할 것을 요구하여 범죄가 국내법에 의하지 않을 상황을 아예 배제함으로 써 자국 중심적 범죄예방 정책을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IV. 부다페스트협약 가입 준비 방안 제시

일련의 비교 결과를 통해 부다페스트협약은 국제 사이버범죄를 다루는 만큼 다른 국제공조 조직, 협약, 법과는 달리 자국의 국익 보호 목적보다 실질적인 사이버범죄 예방을 우선시 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에 자국의 국익 보호와 함께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1. 공조 데이터 평준화

앞 절에서 알아본 대로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공조 방안을 가지고 있으며, 목적과 공조 범위가 미세하게 차이 나는 부분이 있다. 여기에 부다페스트협약 가입까지 진행 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부다페스트협약으로써 공조제의가 들어왔을 때와, 국제형사경찰기구에서 공조제의가 들어왔을 때, 그 이외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을 통하여 공조 할 경우 각기 상이한 방법으로 동일 데이터를 수집하여야 하므로 수고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공조 데이터 수집 방법 및 수집 범위에 대하여 세 가지 공조법의 교집합을 찾아

¹⁴⁾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수사기관의 공조 시 동일한 방식으로 데이터 수집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 부다페 스트협약 가입 이후에도 수사기관의 수사 방식에는 큰 변화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림 1] 공조 데이터 평준화

2. 민관 협력 익명데이터 수집 체계

경찰이 치안을 유지하는 것 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법칙을 준수하여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진 현대 사회인 만큼,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서 수집되는 민간 데이터 양식을 참고 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은 수사기관보다 개인정보 수집 시 더 많은 법적 제재가 가해지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특정인을 특정 하는 익명처리 기술¹⁵⁾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의 정보 수집 정책 혹은 수집된 데이터를 공조 데이터 수집 시 활용한다면 실시간 트래픽 및 콘텐츠 수집 시 범죄와 관련 없는 데이터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가 이루어 질 것이다.

3. 국내법 정비

8 디지털 포렌식 과제 김태룡 (2021)

¹⁵⁾ 구글 크롬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대신, 접속한 기기에 대한 다양한 정보(창 넓이, OS 종류 등)를 수집하여 비실명 익명 정보를 수집하여 서비스 개선에 참고한다.

다양한 연구 보고서 및 논문에서 부다페스트협약을 위해 우리나라의 국내법의 정비 필요성을 언급한다. 특히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언급이 많으나 정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탓에 몇 년째 회자되기만 할 뿐 실질적으로 바뀐 내용이 없다. 이는 국내법 특성상 한 가지 법에 족하지 않으며, 통신비밀보호법이라 할지라도 개인정보보호법과 다양한 판례들이 함께 걸쳐져 있기 때문에 법 내부 조항을 고치기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간에 법령을 정비하기보다 부다페스트협약에 대한 특별 법 혹은 특별 조항을 추가시킴으로써 공조 시에만 해당 조항을 적용시키는 차선책을 제시하는 바이다.

V. 마치면서

사이버범죄 및 기타 국제성 범죄는 인터넷에 대한 의존이 크기 때문에 네트워크 상의 증거 확보가 범죄해결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부다페스트협 약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며, 미래 사이버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해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이다.

하지만 부다페스트협약 가입을 위해서는 국내법 정비뿐만 아니라 데이터 수집 방식, 기존 공조 협약과의 차이점 연구 등 다양한 준비과정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기에 지금처럼 차근차근 준비 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며, 이와 같은 제안이 부다페스트협약 가입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 · · · ·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논문

이기수, 민수현, "한국과 중국의 사이버범죄 형사사법공조 강화를 위한 법개정 검토-유럽사이버범죄 협약을 기준으로",「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4호(2018)

정태진, 이광민,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부다페스트협약 가입과 국제공조 연구", 「경찰학논총」, 제14권 제2호(2019)